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관리 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함

3. 주요내용

-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안 제76조의2제3항 신설)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정정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76조의2제4항 신설)

4.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p> <p>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 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법원이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u></p> <p>④ <u>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u></p> <p>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p>

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파
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711